



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

- 정부는 고위당정협의(6월30일) 등을 거쳐 7월 1일(월) 11시경,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음.
- 이번 내용을 반영한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.
- (첨부) 정부조직 개편방안

행정안전부 담당 부서	조직국 조직기획과	책임자	과 장	신지혜 (044-205-2301)
		담당자	서기관	김재욱 (044-205-2302)
보건복지부 담당 부서	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윤신 (044-202-3370)
		담당자	서기관	김웅년 (044-202-3690)

정부조직 개편방안

2024. 7. 1.



관계부처합동

1.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

1 명칭 : 인구전략기획부

-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, 인력·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부 명칭은 '인구전략기획부'로 명명

2 개편 방향

-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'전략·기획, 조정'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
 - 인구정책 기획, 평가, 예산배분·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 수행
-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
 - ※ 출산·아동·노인(복지부), 일가정양립(고용부·여가부), 가족·청소년(여가부) 등

3 기능 개편

- ① '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' 기능 강화 :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, 부문별 전략·기획 기능 신설

- ▶ 복지부 : 저출산·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
- ▶ 기재부 :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
- ▶ 신설 기능 : 저출생, 고령사회, 인력·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·기획 기능

- ② '조사·분석·평가' 및 '예산배분·조정' 기능 신설

-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
-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사전 예산배분·조정
 -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

③ '사회부총리'를 교육부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변경

▶ 교육부 :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 이관

④ '문화·인식개선 전담 부서' 및 '실장급 대변인' 설치로
'문화·인식개선, 홍보' 기능 강화

⑤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·연구 기능 강화

▶ 통계청 :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이관

▶ 신설 기능 :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·연구 기능

4

입법 관련 사항

□ 개정 대상 법률안 :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○ (정부조직법)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
부처 간 기능조정

○ 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) △ 현 대통령 소속 '저출산·고령사회
위원회'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 및
사무처 폐지, △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 부여

※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을 「인구위기대응기본법」으로 개정

□ 추진 일정 : 7월 중 개정 법률안 발의

II. 정무장관 신설 방안

1 | 추진 배경

-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, 국회-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 필요
- 이해관계 복잡·다변화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할 조직 필요

2 | 신설 방안

- (근거) 「정부조직법」에 정무장관(국무위원) 신설 근거 마련
- (기능)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
- (조직)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·인력으로 구성
※ (과거 사례) 무임소장관('70~'81), 정무장관('81~'98), 특임장관('08~'13)

3 | 추진 계획 : '인구전략기획부' 신설과 동시 입법 추진

참고 1

「정부조직법」 개정 사항

□ 주요 내용

구분	현행	개정안
부총리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획재정부장관 ▶ 교육부장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획재정부장관 ▶ 인구전략기획부장관
인구전략기획부 신설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관장사무 -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- 인구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
기획재정부 사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(인구에 관한 사항 제외)
행정각부 순서 조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획재정부 2. 교육부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... (중략) ... 19. 중소벤처기업부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획재정부 2. 인구전략기획부 3. 교육부 4. 과학기술정보통신부 ... (중략) ... 20. 중소벤처기업부
정무장관 신설	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무위원으로서,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수행

□ 부칙 : 경과규정(공포 3개월 후 시행) 및 타법 개정*

* 기능 조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반영(20여 개 법률)

【 개정 추진방향 】

- ▶ (방향)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사전심의, 정책 평가·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 부여
- ▶ (형식) 「인구위기대응기본법」으로 제명 변경, 전부개정 추진

1 정책범위 확대

- (범위) 기존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→ 확대 기준 + 인구구조변화 적응
- (정책대상) ^이민, ^주거지원 정책 등 포함

2 위원회 개편

- (책임 명확화) 대통령 주재 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(부총리) 소관으로 개편하여 인구정책 권한·책임 일원화
 ※ 위원회 명칭: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→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
- (참여 확대) 기존 정부·전문가 위주 → 확대 기준 + 청년·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 범위 확대
- (사무기구)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라 사무기구 폐지

3 컨트롤타워 권한 강화

- (예산사전심의)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권 부여, 재정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
- (신설·변경 협의) 중앙·지자체 장이 저출생 사업 신설·변경 시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
- (평가·환류) 중앙·지방 인구정책을 평가하고, 결과를 정책에 반영
 ※ 인구전략기획부의 정책평가·수립·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

